

##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○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,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

- 하수도 사용료 31.3% 인상률 반영(안 별표 1)
-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제26조, 별표 7)

#### 나. 규제 완화함

-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(안 제16조의2)
  - 요금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
-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(안 제29조)
  - (현행) 체납액의 3%, 월할계산 ⇒ (변경) 2%, 일할계산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), 「하수도법시행령」 제36조(점용료 및 사용료)  
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

#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##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(2) 규제심사 : 규제개선
- (3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10. ~ 12. 31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**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법 제61조제1항”을 “법 제6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6조(감면)**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9조 중 “100분의 3”을 “100분의 2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

별표 1,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표는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                  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 <p>제26조(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2.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3.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4.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.</p> <p>제29조(가산금)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1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                     ① 법 제61조제3항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감면)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9조(가산금)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2-----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. (가산금 = 미납요금 × 2/100 × 12개월 × 연체일수/365)</p>

[별표 1]

##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-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.
-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-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업종구분	사용량구분 (세제곱미터)	세제곱미터당 단가 (원)	현행
가정용	1 ~ 20	<u>160</u>	<u>101</u>
	21 ~ 30	<u>220</u>	<u>136</u>
	31 이상	<u>300</u>	<u>182</u>
일반용	1 ~ 30	<u>160</u>	<u>120</u>
	31 ~ 50	<u>200</u>	<u>153</u>
	51 ~ 100	<u>250</u>	<u>186</u>
	101 ~ 300	<u>290</u>	<u>215</u>
	301 이상	<u>350</u>	<u>265</u>
산업용	1톤당	<u>160</u>	<u>120</u>

[별표 7]

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(제26조제1항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	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1~3급)	
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	100퍼센트
라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「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	
마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	50퍼센트
바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하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	20퍼센트

주)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

※ 비고

○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처리 수수료, 원인자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다.